

**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행	개정안	비고
<p><b>제3조(지원대상 중소기업)</b> (생략)</p> <p><b>제4조(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)</b> (생략)</p>	<p><b>제3조(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구분 운용)</b> (생략)</p> <p><b>제4조(지원대상 중소기업)</b> (생략)</p>	<p>- 조문의 순서 변경</p>
<p><b>제5조(특별지원부문)</b> ① 특별지원부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에 사업장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기업</li> <li>2. <b>제3조</b> 제13호(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)에 해당하는 기업</li> <li>3.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다만,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정대상에 포함)대상에 포함)</li> </ol>	<p><b>제5조(특별지원부문)</b> ① 특별지원부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에 사업장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기업</li> <li>2. <b>제4조</b> 제13호(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)에 해당하는 기업</li> <li>3.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(B2512-2)에 따른 신용등급 1~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다만, 금융기관이 SOHO 기업에 대해 기업여신 신용등급 외의 별도 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정대상에 포함)대상에 포함)</li> </ol>	<p>- 인용 조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</p>
<p><b>제6조(전략지원부문)</b> ① 전략지원부문은 제3조 제6호(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) 및 제10호(농림수산업 관련기업)에 해당하는 기업중 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.</p> <p>② 전략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 다만, <b>제3조</b>의 &lt;별표 1&gt;에서 정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대출 실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</p> <p>(생략)</p>	<p><b>제6조(전략지원부문)</b> ① 전략지원부문은 제3조 제6호(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) 및 제10호(농림수산업 관련기업)에 해당하는 기업중 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.</p> <p>② 전략지원부문은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실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. 다만, <b>제4조</b>의 &lt;별표 1&gt;에서 정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대출 실적에 한정하여 지원한다.</p> <p>(생략)</p>	<p>- 인용 조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</p>

현행		개정안		비고
<p><b>제7조(일반지원부문)</b> ① 일반지원부문은 <b>제3조</b>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중 제5조(특별지원부문) 및 제6조(전략지원부문)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제5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. 다만, 제5조 제5항 및 제6조 제5항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(생략)</p>		<p><b>제7조(일반지원부문)</b> ① 일반지원부문은 <b>제4조</b>의 지원대상 중소기업중 제5조(특별지원부문) 및 제6조(전략지원부문)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제5조 제1항 제3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업체로 지정한다. 다만, 제5조 제5항 및 제6조 제5항에 따라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(생략)</p>		<p>인용 조문의 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</p>
<p><b>&lt;신설&gt;</b></p>		<p><b>부 칙 &lt;2023. 1.&gt;</b></p> <p><b>제1조(시행일)</b> 이 기준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제2조(경과조치)</b> 이 기준 시행일 전에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.</p>	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 규정</p> <p>- 경과조치 규정</p>
<p>&lt;별표 1&gt;</p> <p><b>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</b></p>		<p>&lt;별표 1&gt;</p> <p><b>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실적 선정기준</b></p>		
<b>전산코드</b>	<b>지원부문</b>	<b>선정기준<sup>1)</sup></b>		
		(생략)		
A6	추천기업	<p>- 인천광역시 선정된 비전기업(인증서 발급 5년 이내)</p> <p>-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		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<p>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</p> <p>- &lt;별표 1-1&gt;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*, 혁신기업*,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</p> <p>*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</p> <p>- &lt;별표 1-1&gt;의 해당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</p> <p><b>-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</b></p> <p>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중 영리법인</p> <p>- 중소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(대출시점 기준) 협약과제를 완료한 기업</p> <p><b>&lt;신설&gt;</b></p>		<p>- 인천광역시의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을 추천기업 지원대상에 추가</p> <p>- 인천광역시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을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지원대상에서 삭제</p> <p>- 소재·부품·장비 생산기업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삭제하고 동 조건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을 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에 추가</p>
		(생략)		
<b>전산코드</b>	<b>지원부문</b>	<b>선정기준<sup>1)</sup></b>		
		(현행과 같음)		
A6	추천기업	<p>- 인천광역시 선정된 비전기업(인증서 발급 5년 이내)</p> <p>-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</p> <p><b>- 인천광역시로부터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 자금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</b></p>		
A8	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	<p>인천본부 담당지역(인천광역시, 부천시, 김포시)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다음을 만족하는 기업</p> <p>- &lt;별표 1-1&gt;의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*, 혁신기업*, 녹색기업 및 수출관련기업</p> <p>* 창업후 7년 이내 기업 포함</p> <p>- &lt;별표 1-1&gt;의 해당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</p> <p><b>&lt;삭제&gt;</b></p> <p>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중 영리법인</p> <p>- 중소기업부의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사업 참여기업으로서 최근 2년 이내(대출시점 기준) 협약과제를 완료한 기업</p> <p><b>-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및 제 14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2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</b></p>		
		(현행과 같음)		

현행			개정안			비고	
<b>전산코드</b>	<b>지원부문</b>	<b>선정기준<sup>1)</sup></b>	<b>전산코드</b>	<b>지원부문</b>	<b>선정기준<sup>1)</sup></b>		
A11	소재·부품·장비 생산기업	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-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 (생략)	A11	소재·부품·장비 생산기업	-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·부품·장비 전문기업 <삭제> (현행과 같음)		
<별표 1-1>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			<별표 1-1> 미래성장유망산업 및 제조업내 5대 업종				
<b>산업명</b>	<b>업종</b>	<b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</b>	<b>산업명</b>	<b>업종</b>	<b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</b>		
미래성장유망산업	바이오산업	(생략)	미래성장유망산업	바이오산업	(현행과 같음)	-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수정	
	관광산업			관광산업			
	물류산업			물류산업			
	항공	항공산업 글로벌 인증(AS9100, NASCAP)을 받은 기업	항공	항공산업 글로벌 인증(AS9100, NASCAP)을 받은 기업			
		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	31312	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	31312		
로봇	항공기용 부품 제조업	<b>32322</b>	항공기용 부품 제조업	<b>31322</b>			
	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2조의2에 의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	<b>28280</b>	로봇	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42조의2에 의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			
산업용 로봇 제조업	산업용 로봇 제조업		<b>29280</b>				
제조업내 5대 업종	(생략)		제조업내 5대 업종	(현행과 같음)			
<별표 2>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			<별표 2>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정 제외 업종				
<b>업종명<sup>1)</sup></b>	<b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</b>		<b>업종명</b>	<b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</b>			
주점업	<b>5621</b>	주점업	주점업	<b>56211</b>	일반유흥주점업	- 주점업, 전문서비스업, 보건업을 표준안에 따라 세분화	
금융관련업	(생략)	금융관련업		<b>56212</b>	무도유흥주점업		
부동산업				<b>711</b>	<b>56213</b>		생맥주 전문점
전문서비스업					<b>712</b>		법무 관련 서비스업
			<b>712</b>	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	금융관련업		(현행과 같음)
	7151	회사본부	부동산업	(현행과 같음)			
			전문서비스업	<b>71101</b>	변호사업		
				<b>71102</b>	변리사업		
				<b>71201</b>	공인회계사업		
				<b>71202</b>	세무사업		
				7151	회사본부		

현행		개정안	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업종명<sup>1)</sup>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</th> </tr> <tr> <td>수의업</td> <td rowspan="3"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인력공급업<sup>2)</sup></td> </tr> <tr> <td>사업지원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>보건업</td> <td><b>86 보건업</b></td> </tr> <tr> <td>노래방</td> <td rowspan="4">(생략)</td> </tr> <tr> <td>무도장</td> </tr> <tr> <td>도박장</td> </tr> <tr> <td>기타 개인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: 1) ~ 3) (생략)</td> </tr> </table>	업종명 <sup>1)</sup>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	수의업	(생략)	인력공급업 <sup>2)</sup>	사업지원 서비스업	보건업	<b>86 보건업</b>	노래방	(생략)	무도장	도박장	기타 개인 서비스업	주: 1) ~ 3) (생략)		<table border="1"> <tr> <th>업종명</th> <th>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</th> </tr> <tr> <td>수의업</td> <td row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인력공급업<sup>2)</sup></td> </tr> <tr> <td>사업지원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>보건업</td> <td><b>861 병원</b></td> </tr> <tr> <td>노래방</td> <td rowspan="4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>무도장</td> </tr> <tr> <td>도박장</td> </tr> <tr> <td>기타 개인 서비스업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: 1) ~ 3)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able>	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수의업	(현행과 같음)	인력공급업 <sup>2)</sup>	사업지원 서비스업	보건업	<b>861 병원</b>	노래방	(현행과 같음)	무도장	도박장	기타 개인 서비스업	주: 1) ~ 3) (현행과 같음)		
업종명 <sup>1)</sup>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의업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력공급업 <sup>2)</su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지원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업	<b>86 보건업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래방	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도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박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개인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: 1) ~ 3) 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의업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인력공급업 <sup>2)</su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업지원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건업	<b>861 병원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노래방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무도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도박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타 개인 서비스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: 1) ~ 3)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별지 제3호 서식&gt;</p> <p><b>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</b></p> <p>(      년      월중)</p> <p>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</p> <p>은행(회)      부(점)장      (인)</p> <p>(백만원, 연%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청정보</td> <td>업체현황</td> <td>대출내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(생략)</td> </tr> </table> <p>주: 1) ~ 16) (생략)</p>	신청정보	업체현황	대출내역	(생략)			<p>&lt;별지 제3호 서식&gt;</p> <p><b>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</b></p> <p>(      년      월중)</p> <p>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</p> <p>은행(회)      부(점)장      (인)</p> <p>(백만원, <b>bp</b>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신청정보</td> <td>업체현황</td> <td>대출내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3">(생략)</td> </tr> </table> <p>주: 1) ~ 16) (현행과 같음)</p>	신청정보	업체현황	대출내역	(생략)			- 표준안에 따라 신규 취급실적 보고서의 금리단위를 연%에서 bp로 변경																		
신청정보	업체현황	대출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청정보	업체현황	대출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&lt;별지 제4호 서식&gt;</p> <p><b>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</b></p> <p>(      년      월중)</p> <p>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</p> <p>은행(회)      부(점)장      (인)</p> <p>(백만원, 연%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변동전 보고내역</td> <td>변동보고내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(생략)</td> </tr> </table>	변동전 보고내역	변동보고내역	(생략)		<p>&lt;별지 제4호 서식&gt;</p> <p><b>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취급실적 변동보고서</b></p> <p>(      년      월중)</p> <p>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귀하</p> <p>은행(회)      부(점)장      (인)</p> <p>(백만원, &lt;삭제&gt;)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변동전 보고내역</td> <td>변동보고내역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/table>	변동전 보고내역	변동보고내역	(현행과 같음)		- 사용하지 않는 연%단위 삭제																						
변동전 보고내역	변동보고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변동전 보고내역	변동보고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